선용품 업무관련 개선사항 등 통보

내국선용품의 업무불편 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래 개선사항을 **2017.4.1.부터 시행**. 다만, 세관별 선용품 적재허가기준은 **자체적으로 시행**

1 내국선용품 품목번호 변경

○ 내국과 외국 품목번호가 상이하여 업체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선용품 품목번호를 외국선용품 품목번호 체계로 변경

현행	개선안
A 맥주, B 소주, C 음료수, Z 기타	A(주류), B(담배), C(육류), D(식품류), E(전자제품), F(조리기구), G(선박부품), H(악세사리), I(유류), S(조건부선용품), T(선박폐기물), Z(기타)

2 내국선용품 첨부서류 제출

○ 내국선용품 적재 신청할 때 OOO외 OO종으로 신고할 경우 세부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출

< 첨부서류 제출방법 >

► (UNI-PASS) 적재신청→첨부서류사후제출→첨부→전송→세관승인
► **(자체시스템)** 적재신청→UNI-PASS→첨부서류사후제출→첨부→전송→세관승인

3 내국선용품 적재완료 보고(전산자동완료 등록 중지)

현행	개선안
내국선용품(주류, 담배 제외) 적재허가일부터 7일 경과하면 전산자동완료 등록	내국선용품 적재완료後 세관에 완료보고(전자문서 또는 선장 적재서명 확인서)

4 세관별 선용품 적재허가기준 마련

○ 국내반입 우려가 높은(담배 등) 물품은 선용품 적재수량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세관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재기준 마련 시행